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종 환 의원입니다.

- 이렇게 선배·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되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생활체육은 전문체육과 달리 시민이 중심이 되는 활동으로써 건강증진, 여가선용, 유대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있어 적절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합당한 지원과 육성책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에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 이에,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이나 역량강화 관련 지원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2조제6호의2),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내용을 반영하는(안 제16조제1호의2)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